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7조의2 및 이사회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과 역할)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지며, 주주와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단, 사외이사 후보는 이사회에 75% 이상 출석이 가능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정한 독립성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또는 이사회 운영 담당 부서장에게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가 법규 및 사외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는 사외이사 재임 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제1항,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 2 장 구 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②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5조(위원장) ①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의 유고시에는[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6조(소집권자)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소집절차) ①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1주간]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8조(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2. 사외이사후보군 관리
3.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2일]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장 보칙

제13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재무담당 임원 또는 이사회 운영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4조 (외부 자문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법률고문 등 외부 전문가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